

제329회 임시회
2014. 4. 14.(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4. 14.(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3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4월 8일

-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허사업 제한 등을 주무관청에 요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 통보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세자에 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 통보

○ 채권자 등에 교부할 금전의 도금고 예탁 근거 신설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등을 주무관청에 요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채권자 등에 교부할 금전의 도금고 예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8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5
----------	-----

제출연월일 : 2014년 3월 3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허사업 제한 등을 주무관청에 요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 통보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세자에 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 통보
- 채권자 등에 교부할 금전의 도금고 예탁 근거 신설 (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허가 등의 제한요구 통보) 영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와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7조(허가 등의 제한요구 통보) 영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시에는 배 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 분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소 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p>	<p>제9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 ----- ----- ----- ----- ----- ----- -----.</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

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허가 등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